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8.(수) 09:00 배포 2026.11.18.(수) 08:30

쟁점 없는 특허심사 더욱 빠르게!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 '특허 가능'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겼다면, 특허심사 결정 더 빨라진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 18.(수)부터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간 쟁점이 없는 경우에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보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출원인, 변리사 등의 고객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허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은 특허 거절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겨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출원인은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라도 보정서가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출원인은 우선심사의 경우 2개월, 일반심사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은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우선 적용되어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공한다.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심사 신속결정: 종전 6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 제공을 2개월 이내로 단축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신속결정 특허로 기능개선 및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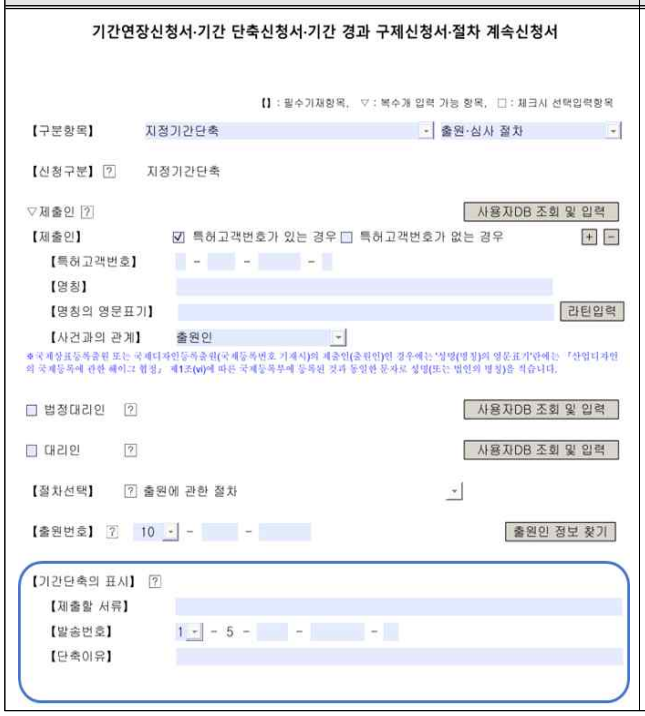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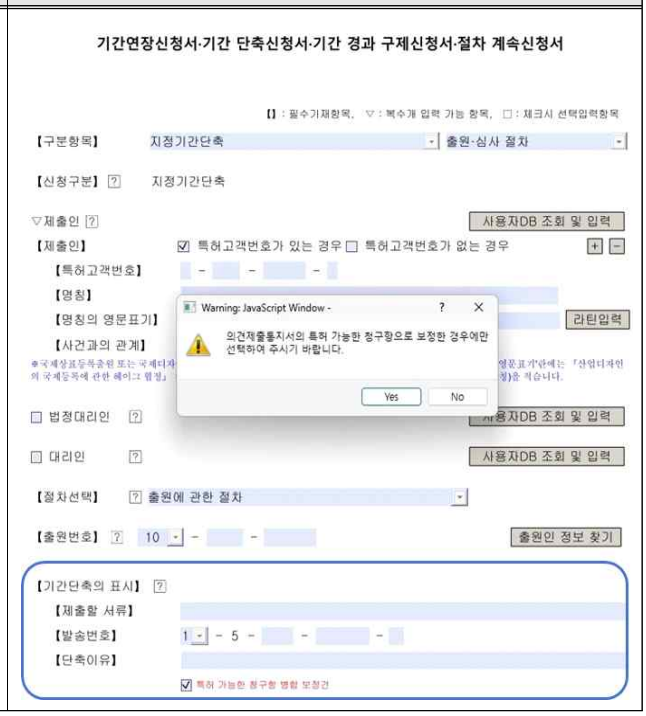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표 (042-481-5389)
		담당자	사무관	김진화 (042-481-39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신속결정 특허로 기능개선 및 신청방법**

□ 특허로 서식작성기 기능개선(기간단축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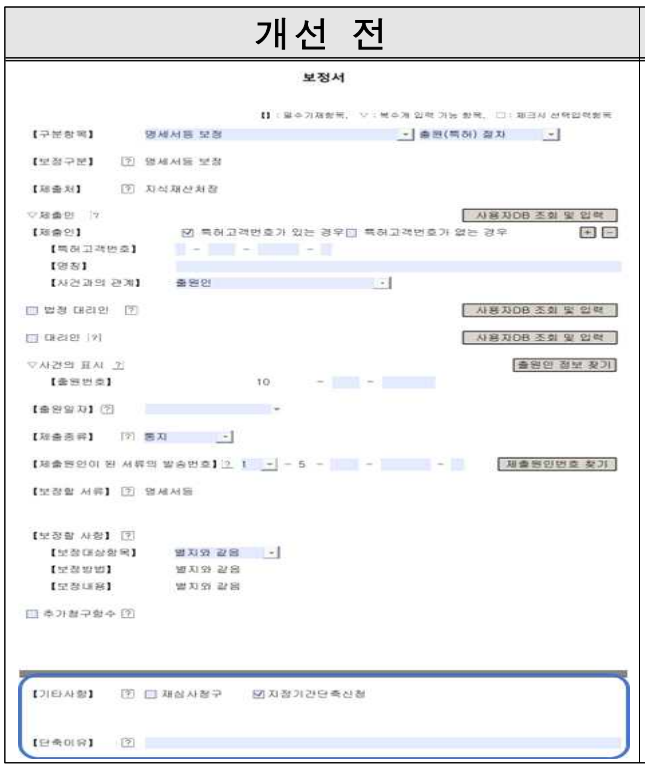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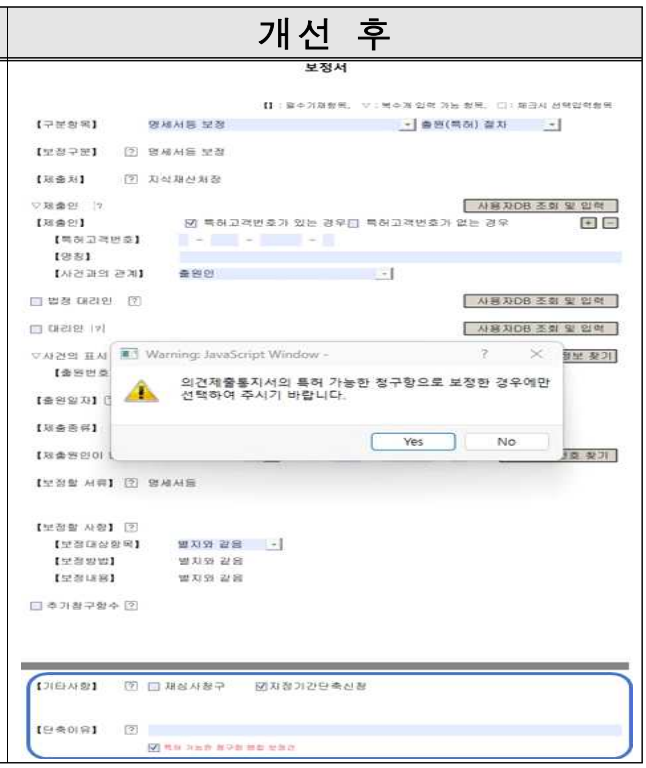
○ 기간단축의 표시 → 단축이유 → **특허 가능한 청구항 병합 보정건**(체크박스)

개선 전	개선 후
	

※ 웹출원의 경우에도 동일

□ 특허로 서식작성기 기능개선(보정서)

○ 기타사항 → 지정기간단축신청 → **특허 가능한 청구항 병합 보정건**(체크박스)

개선 전	개선 후
	

※ 웹출원의 경우에도 동일